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2-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0935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이옥선
2. 김군자
3. 김순옥
4. 망 유희남의 소송수계인 이송규
5. 강일출
6. 정복수
7. 박옥선
8. 망 김외한의 소송수계인

가. 송순억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중방안길 34-3 (무릉리)

나. 송순만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52길 20, 5동 1602호 (태전동, 삼
성아파트)

다. 송화자

안동시 영호8길 13-3 (안흥동)

라. 송순각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2길 18, 301호 (성당동, 초암빌라)

마. 송순재

청주시 흥덕구 신월로175번길 77 (복대동)

9. 김정분

원고 1, 2, 3, 4, 5, 6, 7, 9의 주소 경기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85 (원당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피고, 항소인

박유하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집현관 714호 (군자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세욱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10472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정종주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정종주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¹⁾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정종주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 이옥선, 김군자, 김순옥, 강일출, 정복수, 박옥선, 김정분 및 망 유희남, 김외한(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

1) 망 김외한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11. 사망하였고, 피고가 2024. 11. 4. 망 김외한의 상속인인 원고 송순억, 송순만, 송화자, 송순각, 송순재가 망 김외한의 소송 절차를 수계하도록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이들이 망 김외한의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원고 송순억, 송순만, 송화자, 송순각, 송순재가 망 김외한의 청구금액 중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망 김외한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11. 사망함에 따라 원고 송순억, 송순만, 송화자, 송순각, 송순재가 이 법원에서 망 김외한의 소송을 수계하였고, 망 유희남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 이송규가 이 법원에서 망 유희남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이 사건 도서의 목차

이 사건 도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 문 다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제1부 위안부란 누구인가 - 국가의 관리, 업자의 가담
제1장 '강제연행'과 '국민동원' 사이
제2장 위안소에서 - 풍화되는 기억들
제3장 패전 직후 - '조선인 위안부'의 귀환
제2부 기억의 투쟁 - 다시, '조선인 위안부'는 누구인가
제1장 지원단체의 위안부 설명
제2장 하나뿐인 '조선인 위안부'이야기
제3장 공모하는 욕망들
제4장 일본인 지원자들의 문제
제5장 일본인의 부정의 심리와 식민지 인식
제3부 냉전 종식과 위안부 문제
제1장 해석의 정치학 - '사죄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제2장 정치화된 일본의 지원운동
제3장 한국 지원운동의 모순
제4장 세계의 생각을 생각한다
제5장 일본 정부에 기대한다
제4부 제국과 냉전을 넘어서
제1장 위안부와 국가

』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다. 이 사건 도서의 구성 및 내용"을 "라. 이 사건 도서의 구성 및 내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7면 마지막 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이 사건 도서는 제1부 '위안부란 누구인가 - 국가의 관리, 업자의 가담', 제2부 '기억의 투쟁 - 다시, 조선인 위안부는 누구인가', 제3부 '냉전 종식과 위안부 문제', 제4부 '제국과 냉전을 넘어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2, 3부는 피고 박유하가 2011. 12.부터 2012. 5.까지 일본의 인터넷 매체인 'WEBRONZA'에 연재한 글을 번역한 것인데, 피고 박유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반복을 피하기 위해 조금 다듬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는 거의 바꾸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2) 서문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도서의 집필목적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안부 문제가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위안부가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우리가 위안부에 관하여 하나의 이미지만을 떠올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고는 지금까지 오로지 소수의 관계자들의 생각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태도를 결정지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견이 한일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현재의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일 양국의 이해를 위해, 나아가 동아시아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이 사건 도서를 저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3) 제1부는 제1장 '강제연행과 국민동원 사이', 제2장 '위안소에서 - 풍화되는 기억

들', 제3장 '패전 직후 - 조선인 위안부의 귀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① 위안부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일본인 센다 가토의 '목소리 없는 여성 8만 명의 고발, 종군위안부'라는 책에 나타난 인식과 주장을 소개하고, ② 그동안 일본군이 위안부를 직접 끌어갔다고 알려져 있으나 소개업자, 포주들, 관리인들이 자신을 데려갔다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인용하면서 위안부들을 동원한 주체로서 민간업자들이 있었고, 전시상황에서 위안부라는 존재를 발상하고 모집하며 불법적인 모집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집 자체를 중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군의 책임이 크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업자들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위안부의 강제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식민주의와 국가와 가부장제의 강제성에 있다고 한다. ③ 일본의 가라유키상(19세기 후반에 가난을 이유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던 일본인 여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위안부는 타국으로 떠난 남성들을 현지에 묶어 두기 위해 동원된 '가라유키상'으로서 성적 위무를 포함한 고향의 역할을 하였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여성을 위안부로 만들어 상품화한 업자, 성매매한 이용자들 가운데에 조선인들도 적지 않았으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어간 직접적인 주체는 업주라고 하며, 위안부의 불행을 만든 것은 민족요인보다 가난과 남성우월주의적 가부장제와 국가주의였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화가 됨에 따라 일본인 창기의 위치를 조선인 여성이 대체한 것이라고 한다. ④ 일본군은 일찍부터 국가의 확장과 함께 존재했던 매춘시설을 이용하였고, 주둔 병력이 늘어나면서 매춘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군이 장소를 늘리고 관리를 하기 위해 지정했던 곳이 위안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안소는 이전부터 존재한 유곽시설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⑤ 그리고 정신대는 남성들을 전쟁에 보내 노동력이 부족해진 일본이 여성들을 공장 등의

일반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만든 근로동원제도로써, 위안부와 달리 동원되는 이들이 대부분 학교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이들이었는데, 위안부가 강제 연행되었다고 말하는 기자, 재일교포 학자, 요시다 세이지 등은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안부의 정황은 하나가 아님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은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 주변 가담자의 소거, 예외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수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다.

4) 제1부 제2장에서는 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기본적 역할은 군인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무하고 사기를 북돋는 역할이었고 일본군과 사랑도 나눴다고 한다. 위안부들이 처했던 상황은 장소와 시기, 전방인지 후방인지 여부, 어떤 군인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달랐으며(피고는 증언을 인용하며 일본군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었고, 일본군 위안부가 병사에게 공감 또는 연민을 느끼기도 했으며, 위안소에서 좋은 추억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처한 상황이 불행한 상황이었다는 본질적인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안부의 다양한 모습을 보지 않고는 위안부의 총체적인 면모를 포착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위안소를 이용하는 일 자체에 수치감을 느끼는 일본군도 있는 등 군인들의 모습 역시 다양했다고 한다. ② 그리고 위안부들을 전쟁터로 데리고 다니며 군에 제공했던 주체는 업자들이었고, 위안부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착취를 하고 폭행 등 가혹하게 다룬 것은 군인뿐 아니라 업자들이기도 했으며, 위안부들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던 주체는 관리인이거나 포주들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5) 제1부 제3장에서는 패전 직후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되어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군이 패전 직후 조선인 위안부를 무조건 사살했다는 이

야기를 보편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6) 제2부는 제1장 '지원단체의 위안부 설명', 제2장 '하나뿐인 조선인 위안부 이야기', 제3장 '공모하는 욕망들', 제4장 '일본인 지원자들의 문제', 제5장 '일본인 부정의 심리와 식민지 인식'을 구성으로 하면서 위안부 지원단체와 일본 지원자들,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① 먼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라고 한다)가 일찍이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형성되었고, 정대협이 제공하는 설명과 정보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하나의 공적 기억만 만들어 왔으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 만화, 노래도 단 하나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성노예라는 단어를 정착시켰는데 성노예의 주인은 군대라기보다는 '업자'이고, 무엇보다 이들이 총체적인 피해자는 맞으나 그런 측면에만 주목하고 피해자의 틀에서 벗어나는 기억을 배제하고 은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한다. ② 일본의 지원자들에 대하여,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동지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에서 위안부 이용이 제도적으로 실시된 이유를 국군주의나 파시즘보다도 일본이 일찍부터 유곽이라는 공창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서 찾아야 함에도 위안부 문제의 책임자로 군이나 제국 일본의 정점에 존재하는 천황만을 지목하였으며, 위안부 문제를 파시즘에 의한 일본 특유의 특수범죄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③ 마지막으로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인들의 견해를 분석하면서, 이들도 '위안부란 매춘부'라는 하나의 상만 고집해왔는데,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고 반박하고, 일본 정부가 주체가 되

어 강제연행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이 자행되는 시스템을 방기했으므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이 부여된 역할이었던 위안에 충실하려 했다 해도 그것은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서술한다.

7) 제3부는 제1장 '해석의 정치학 - 사죄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제2장 '정치화된 일본의 지원운동', 제3장 '한국 지원운동의 모순', 제4장 '세계의 생각을 생각한다', '제5장 일본 정부에 기대한다 - 새로운 조치에 나서야 할 세가지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① 먼저 제1장에서 위안부 문제의 발생 경과를 소개하면서, 일본은 1993년 당시 관방장관 고노요헤이의 이른바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로 인정했고, 이러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 아시아여성기금이라고 하고 있다. ② 제2장에서는 위안부를 일본 사회의 개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정치화된 일본의 지원운동을 비판하고 있다. ③ 제3장에서는 정대협이 조선인 위안부의 다른 모습을 은폐하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고 있고, 정대협이 어느새 민족권력화가 되어 개인의 의지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죄를 인정하였고, 기금과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였으며,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안부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가 제시한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정대협의 인식을 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④ 제4장에서는 헌법재판소 등이 근거로 삼은 자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UN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정대협의 위안부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보고서여서 조선인 위안부를 둘러싼 정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맥두걸 보고서도 독자적인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유엔 보고서라는 것만으로 권위 있는 자료가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이후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의 결의는 정대협을 비롯한 한국의 기존 위안부 이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엔 위원회들이 처음에는 일본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을 근거로 권고를 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문제에 관해 일본의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정대협을 비롯한 지원자들은 그런 세계의 시각 변화를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⑤ 제5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새로운 조치에 나서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8) 제4부는 제1장 '위안부와 국가', 제2장 '새로운 아시아를 향해서 - 패전 70년, 해방 70년'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① 제1장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세력을 유지/확장시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만든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에 미군을 위한 기지촌 즉 '한국형 위안소'가 생기게 되었고 이들 역시 미군을 상대하기까지의 과정이나 이후의 생활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다를 바 없다고 하고 있다. 냉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지가 존재하는 한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준비되는 위안부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화된 순간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임에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③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을 올바른 조선인 투사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필요하지만 입법해결은 불가능하며 일본의 제국주의에 앞서 시작된 서양의 제국주의와 그들이 남긴 냉전적 사고를 넘었을 때

진정한 아시아 연대가 가능하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도서의 출판금지가처분 신청 등

1) 원고 등은 2014. 6. 17. 피고 및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한 출판사 대표 정종주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 2014카합10095호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와 정종주는 이 사건 도서의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원고 등과 원고 등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접근 및 취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예비적으로는 '피고와 정종주는 이 사건 도서 중 신청목록의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원고 등과 원고 등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접근 및 취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도서출판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2. 17. 이 사건 도서 중 34군데(별지 2 목록) 부분 중 일부 표현의 삭제를 명하는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 결정의 이유는, ① 채권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현저하고 중대하게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이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적시를 통해 채권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②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③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인용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도서의 출판, 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된다는 것이다.

3) 피고는 2015. 6.경 위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된 표현 부분을 빈칸으로 처리한 후 '제국의 위안부(34곳 삭제판)'를 재출간하였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1) 피고는 2015. 12. 7. "2013. 8. 12. 서울 마포구 서교동 541-28에 있는 '뿌리와 이파리' 출판사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하고 그 무렵 전국 서점 등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원고 등을 포함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1. 25. 별지 4 범죄일람표1 기재 표현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고합329 판결).

3)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27.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의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면서, 별지 5 범죄일람표2 순번 5, 7, 10, 11, 16, 20, 23, 26, 27, 30, 34 기재 표현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표현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나머지 표현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610 판결).

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23. 10. 26. 위 항소심 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배

적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위 파기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항소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5)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24. 4. 12.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 4. 12. 선고 2023노3351 판결).』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3, 25, 2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서 중 별지 2, 3 목록²⁾ 기재 각 표의 '표현' 부분(이하 '이 사건 기재 부분'이라고 한다)과 같이 ㉠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그 모집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한 매춘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이자 전쟁의 '협력자'로 표현하였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이며,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허위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집단표시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기재 부분이 피고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재 부분의 표현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

2) 원고들은 2015. 3. 9.자 준비서면에서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된 34개의 표현(별지 2 참고) 및 이에 대한 주장을 청구권원으로 인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2023. 12. 18.자 준비서면에서 위 표현을 포함하여 53개의 표현(별지 3 참고)이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재 부분은 피고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도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양국의 상호이해를 통한 한일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도서를 출간하였을뿐, 이 사건 도서에서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위안부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자궁적으로 협력하였다고 서술하지도 아니하였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부

가. 관련법리

1) 형법상 명예훼손과의 관계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사실의 적시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언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

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실이란 그의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함에 대하여,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 어느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사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의미의 문맥이나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

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라)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마)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

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같은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 연구도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

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선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기재 부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3, 18, 19, 22, 25호증 등 제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오랜 기간 대학의 일어일문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문학과 한일 근현대사를 연구하였다. 피고는 한일 갈등의 핵심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저서로 출판하였다. 이 사건 도서는 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학문적 표현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서 집필 과정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과 사료를 조사하여 이 사건 도서에 직·간접적으로 인용하였고,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도서 집필 과정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사료 등 연구 자료를 위조, 변조하였다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

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재 부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표현이 그러한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각 표현 전후의 맥락이나 피고가 밝히고 있는 이 사건 도서의 집필 의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도서 전체를 통해 피고의 주제의식, 즉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일본 제국이나 일본군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다른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하여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이 사건 기재 부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학문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이 입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넓어지거나 표현의 내용이 일반화, 추상화될수록 희석될 수 있고, 이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이나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나 비교적 균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의 표현은 비교적 진위 여부의 증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효과가 희석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그대로 미치게 된다. 반면 이를 넘어서는 범위의 집단에 관한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표현은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시대상(時代相)을 정의하는 것과 같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연구자 개인의 종합적 해석이나 평가로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는 적게는 30,000명에서 많게는 400,000명까지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라는 표현을 출신국에 무관한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일본군 위안부 중 조선인을 칭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다양한 연행 경위나 피해 양상에 비추어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사람들 중 생존한 자들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중에서도 일부 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재 부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마) 학문적 표현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다양한 학문적 견해 중 어느 하나의 견해만이 옳다고 선언하는 것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용어의 개념이나 포섭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해당 표현에서 취한 개념이 실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것

이거나, 통용되지 않더라도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대중의 언어습관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으며, 해당 표현이 용어에 대한 특정한 학문적 개념정의를 전제로 한 것임이 표현의 전후 맥락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학문적 견해 표명 내지 의견 진술로 보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들어맞는다.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연행 과정에서 일부 일본 군인의 일탈행위가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일본군의 '공적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나 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개입이 존재하여야 이를 '공적 강제 연행'으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나 주장이 가능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학계에서 주류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대중의 언어습관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이 '공적 강제 연행'에 대한 학문적 개념 포섭을 전제로 한 것임은 표현 전후의 맥락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공적 강제 연행'에 관하여 서술한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학문적 표현, 특히 역사적 사실에 관한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에만 주목하여 손쉽게 암시에 의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학문적 표현에 포함된 특정한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자발성' 혹은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이는 '위안부가

된 경위나 위안소에서의 경험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한 존재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설명 내지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처지와 역할에 관한 피고의 학문적 의견 내지 주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같은 표현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간 것이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는 명제를 단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부

가. 관련법리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참조).

3)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3, 18, 19, 22, 25호증 등 제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재 부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혹은 사실을 왜곡하는 공포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조선인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위안부로 만드는 것이 일본국이나 일본군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서술을 하고 있다. 피고는 일본국이나 일본군이 법령이나 지시 등의 공식적인 정책을 통해 조선인 여성들을 유괴하거나 물리적으로 강제연행하여 일본군위안부로 만든 사실은 없고, 위안부들을 동원한 주체로서 민간인 중개업자나 포주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안부의 모집 과정에서 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여성들을 끌어낸 뒤 팔아넘기는 사기적 수법과 유괴, 납치 등의 강제적인 수법이 있었던 점

및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강제노동에 가까운 혹사를 당했으며 감시를 받으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점을 여러 증언을 직접 인용해 가면서 서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적 모집, 가혹행위 등을 한 주체가 민간인 중개업자, 포주 등이었고, 일본군은 전시상황에서 위안부를 발상하고 모집하며 불법적인 모집을 방관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첫 번째 주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민간업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도서의 여러 곳에서 일본 군인에 의해 물리적으로 강제연행되어 일본군위안부가 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한 '개인적 차원의 범죄'로 파악하고 있다.

학문적 연구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서술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관련 서술의 목적은 위안부가 모집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모집 방식에 여러 사례가 존재함을 학문적·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 등을 지칭하여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되지 않은 위안부에 해당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서술로 인해 원고들이 다소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형량해 보았을 때 피고가 수인한도를 넘어서 원고들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

럽다.

가) 피고는 '일본에서는 근대 초기부터 어린 소녀들을 유괴하다시피 데려가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이 많았는데, 그 여성들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만들어진 공창으로 팔려나갔으며, 이런 여성들을 고향 사람들이 '가라유키상'이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가라유키상을 군인에 빗대어 '낭자군'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이는 "국가의 욕망 실현을 위해 동원되었던 이들이 어느샌가 국가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국가를 위한' 역할을 하는 이들로 인정받게 되면서(물론 동원을 위한 국가의 수사일 뿐이다) 생긴 말이었다. 훗날의 위안부들 역시 '낭자군'이라고 불리었고, '위안부'들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한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간 '이동'이 더 쉬워진 근대에, 경제·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타국으로 떠났던 남성들(군대도 그 하나다)을 현지에 묶어두기 위해 동원되었던 이들이 '가라유키상'이었던 것이다.", "그 안에서 차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안부의 불행을 만든 것은 민족 요인보다도 먼저, 가난과 남성우월주의적 가부장제와 국가주의였다.", "무엇보다, 성노동의 가해자는 여성을 '교육'에서 배제시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아버지나 오빠가 물건처럼 팔 수도 있었던 시대, 여성의 소유권을 남성이 가졌던 시대의 가부장제적 국가였다.", "위안부는 일본의 전시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 지금의 기지촌 여성들 역시 현대의 '위안부'이고, 군대가 존재하는 곳이면 '위안부'는 어느 곳이건 존재했다.", "가난한 여성들의 해외이동을 조장한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주의뿐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자국의 세력을 해외로 넓히려 했던 제국주의였다.", "'위안부 문제'는 국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자본의 문제다. ...

위안소는 표면적으로는 군대의 전쟁 수행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그런 '제국주의'와 인간을 착취하여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의해 지탱되어온 근대 국민국가 체제는, 국가세력을 확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고 고향을 떠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들을 '위안'할 여성들의 조직을 유지해왔다. 그런 의미에서는 러일전쟁 시대의 일본인 위안부도, 태평양전쟁 시대의 조선인 위안부도, 해방 후 한국에 주둔하게 된 미군을 위한 위안소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똑같이 국가(안보 혹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라고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국가주의와 제국주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등의 사회구조적 측면에 있다고 파악하는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일본에서 '가라유키상'으로 불렸던 사람들과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는 모두 국가의 세력확장 과정에서 사회의 최하계층인 가난한 여성들이 국가에 의하여 동원되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점이 있고, 오늘날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과거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군위안부가 되었던 것에는 모두 이러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은 일회성 강간과 납치성(연속성) 성폭력, 관리매춘의 세 종류가 존재했다. '위안부'들의 경우 이 세 가지 상황이 조금씩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인 위안부의 대부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세 번째 경우가 중심이었다."라고 서술하였는바, 그와 같이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 대부분은 '관리매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또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그런 쿠마라스와미조차 '위안부'의 상황을 '강요된 매춘'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안부들을 세 가지 — 자발적인 매춘업, 음식점이나 세탁부로 갔다가 '위안'을 하게 된 경우, 강제연행 — 로 분류하는 등 '위안부'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서술 내용을 보면, 피고는 위안소의 상황을 군의 관리하에서 포주들이 위안부들에게 강제로 성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는 포주들이 착취하는 '강요된 매춘'으로 인식하면서 그 형태('틀')가 매춘, 즉 성매매업소였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매춘의 요소가 있다'는 표현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본군 위안소는 관리매춘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의 '동지'이자 전쟁의 '협력자'로 표현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국가주의와 제국주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등의 사회구조적 측면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의 일원이 되어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던 적국의 여성들과 일본군에 대한 관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이러한 조선인 위안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역할 담당에 대해서 "군인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위무하고 사기를 북돋는 역할",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위안이라는 이름의 노동이 대부분의 위안부들에게 성과 신체를 혹사당하는 가혹한 노동이었다", "(위안부는) 일본의 제국 확장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된 존재", "(위안부는)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하는 등, 위와 같은 역할이 일본 제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되었다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안부 생활을 하는 동안 간호원 역할을 하기도 했다거나, 기모노를 입고 연예회를 하고 군사훈련을 받기도 했다는 증언, 군인들과 고향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는 증언, 일본인 위안부들이 '나도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일본인 업자의 증언, 군인들을 위로해주기도 했고 군인들로부터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말도 들었다는 위안부의 증언, 전쟁이 끝난 뒤 일본으로 와서 전쟁범인을 수용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위안부의 증언 등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러한 증언이 나타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나름의 분석이나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는 '벗어나고 싶은 공간인 위안소에서 사랑과 평화가 존재하였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설명하고자 '동지', '협력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렇다고 해도 위안소가 지옥 같은 체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옥을 살아내는 방법으로 연민과 공감, 운명론적 자세를 취하는 개인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위안부들의 '금지'나 '애국'에 관하여 위안부가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적극성은 포기과 체념, 혹은 그저 살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한 트릭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서술하거나,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

었다. 물론 그것은, 남성과 국가의 여성 착취를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했지만,..."이라고도 서술한다. 이는 피고가 표현하는 바에 따른 "위안부의 '애국심'이나 '자긍심'" 역시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서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 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건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순간부터 걷어낼 수 없게 된 모순이었다."는 서술,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을 언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식민지배에 저항하였으나 굴복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당시 식민지배 하에서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 취급되어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에 의해 동원되었던 존재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과 적이 아닌 동지와 같은 관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면서, '위안부들은 가혹한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군인들에 대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긍지나 애국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주관적인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가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거시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이 위안부에 끌려간 자들에게도 위안부로서 전쟁에서 담당하는 기능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일 뿐, 위안부가 긍지나 애국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읽히지는 아

니한다.

4) 피고가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일본군이 전시상황에서 위안부라는 존재를 발상하고 모집하였으며, 불법적인 모집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집 자체를 중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군은 책임을 져야 하는 첫 번째 주체이며, 위안부의 강제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식민주의와 국가와 가부장제의 강제성에도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위안부를 직접적으로 모집한 자는 민간인 중개업자 등이고, 위안부가 유괴되거나 자발적으로 팔려갔다고 해도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제국권력의 결과인 이상 일본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도서의 서문에서 그 집필 목적을 밝혔는데, 그 대략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우선, 위안부 문제가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인식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양국 사이의 갈등과 대립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피고는 그러한 상황의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는 '위안부'는 결코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우리(국민)들의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였고, 취사선택된 정보들만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와 기억만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결과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혐오 또는 무관심의 감정이 서서히 커져 온 상황, 그 원인으로 한국 국민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위안부 지원단체나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기술한 다음, 한일 양국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도서를 저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위 서문에 나타난 피고의 상황 인식이나 원인 진

단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그러한 서문의 내용과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도서를 저술한 주요한 동기가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일본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원고들 등의 개별 인격권을 침해하기 위해 이 사건 도서를 저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서를 저술함에 있어서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명예감정에 다소간의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 가치와 비교·형량하여 보았을 때 피고에게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5) 피고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하여 '일본군위안부들은 위안부가 된 경위나 위안소에서 경험 모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였는데, 그 동안 우리는 그중 하나의 모습, 즉 10대 소녀 시절에 일본 군인에 의하여 직접 강제로 연행되어 위안부가 된 사람의 모습만을 알고 있었으나, 그와 다른 모습의 위안부도 있었다는 점도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전제로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서 종래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다른 일본군위안부의 모습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종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안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혹은 '예외적인 경우였다'라고 할 뿐 그러한 모습의 위안부는 거짓이라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6) 피고의 견해는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견해들 중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온당치 못한 견해일 수는 있으나, 이는 관련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및 사회의 자유로운 공개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이지

않거나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견해가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견해 내지 주장, 표현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쉽게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할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7) 또한, 이 사건 도서에서 학술적인 주장과 그 근거 등을 전개하면서 반대되는 사실, 다른 주장 등이 소개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등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도서 출판 당시 정대협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등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 등의 개별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8)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우리 학계와 시민 사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확립되어가는 상태인바, 이 사건 도서에서 불명료한 개념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 전후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서술 등이 다수 발견되는 점, 제시된 사료나 문학작품 등의 근거와 그에 터잡아 제기된 피고의 주장 내용 사이의 논리적 연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도서에서 주장한 내용만으로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에 유의미할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 외에, 원고들과 피고의 각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취지, 그 내용과 표현을 접하는 일반 독자들이 받을 인상·느낌과 그 이해 및 여과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기재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을 두고 객관적으로 원고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서 상당성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는 사회상규 내지 통념상 수인한도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장 석 조 

판사

배광국

배 광 국 

판사

박형준

박 형 준 

별지 1

도 서 목 록

제목 : 제국의 위안부

저자 : 박유하

출판사 : 뿌리와 이파리

ISBN : 9788964620304 끝.

목 록

순번	쪽	내용
1	19쪽	<u>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u>
2	32쪽	<u>'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u>
3	33쪽	<u>'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u>
4	38쪽	<u>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u>
5	38쪽	<u>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u>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6	61쪽	<u>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공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u>
7	62쪽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

		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u>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u>
8	65쪽	가족과 고향을 떠나 떠나면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u>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u>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u>조선인 위안부</u>'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u>썩들 수 있었다.</u>
9	67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u>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u>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뺐"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 봐"라는 말은, <u>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u>
10	99쪽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u>전쟁범인</u>',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u>일본군</u>'과 함께 행동하며 '<u>전쟁을 수행</u>'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u>피해자</u>'라고 해도 '<u>제국의 일원</u>'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11	112쪽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u>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u>
12	120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u>'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u>
13	130쪽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u>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u>
14	137쪽	<u>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u>
15	158쪽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u>"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u> (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16	160쪽	오히려 <u>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u> (『화해를 위해서』).
17	160쪽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u>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여자</u> 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금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u>"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u> (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18	190쪽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u>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u>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19	191쪽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u>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u>(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20	205쪽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u>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u>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21	206쪽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u>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u>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22	206쪽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u>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u>으로서 '일본군'에 <u>협력했다</u>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23	207쪽	<u>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u>
24	208쪽	<u>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u>
25	215쪽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 <u>강제연행</u> '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 <u>국가범죄</u>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26	246쪽	1996년 시점에 ' <u>위안부</u> '란 근본적으로 ' <u>매춘</u> '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7	265쪽	<u>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u>
28	265쪽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 <u>제국의 피해자</u> '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 <u>동지</u> '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29	291쪽	<u>'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u>
30	294쪽	그들이 <u>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u>
31	294쪽	그녀들이 ' <u>낭자군</u> 이라고 불렸던 것은 <u>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u>
32	294쪽	<u>'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u>

33	296쪽	그리고 <u>'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u>
34	306쪽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u>'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u>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끝.

목 록

번 이	목차	페이지	표현	문제점
1	제 1부 - 제 1 장 -1.	19쪽 8줄	센다는 '위안부', '군인'과 마찬가지로, <u>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 도운다</u>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지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u>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u> .	피고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성노예 생활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서 애국을 한 것과 동일시하며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피고의 시각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애국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희생에 대한 보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위안부 피해의 본질을 왜곡함에서 비롯된 것 불과합니다. 피고는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 출신 위안부처럼 일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애국하는 존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희생과 애국은 자발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강요당하거나 기만에 의해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한 조선인 위안부들을 자신을 희생해 애국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노예 생활을 한 피해자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박유하는 일본출신 위안부에 대한 센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애국한 존재라고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2	제 1부 - 제 1 장 -2.	31쪽 9줄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외국에서 서러운 음지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그 역할은 <u>자신에 대한 금지가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수 있다</u> .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을 위해 애국했던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존재라고 전제한 후 '위안부'로서의 역할이 삶의 금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성노예 생활을 하며 비참하게 생활한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오히려 성노예 생활이 삶의 금지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고 왜곡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3	제 1부 - 제 1 장 -2.	32쪽 3줄	<u>"가라유키상의 후예."</u>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피고는 가라유키상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팔아 돈을 벌고 이를 통하여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여 일본 국가의 국민으로서 담당할 수도 있었다고 기술한 후 위 가라유키상의 후예가 바로 "위안부"의 본질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4	제 1부 - 제 1 장 -2.	33쪽 7줄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u>'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u>	의사에 반해 성착취를 당했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를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성을 팔았던 일본인 창기와 동일시하고 그들의 고통이 서로 다르지 않다

			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중략)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생기게 된 것은 이들의 위치를 조선인 여성들이 대체한 결과였다.	고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나 기망에 의하여 위안소에 끌려가 강제 성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피해는 일본군의 조직적인 위안소 설치와 동원에 의한 전쟁범죄에 기인한 것입니다.
5		38쪽 4줄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일본군의 필요에 의하여 위안부를 모집한 경우도 있지만, 위안부의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성을 팔았던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라고 기술하여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성을 판 가라유키상과 같은 입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모두 강제나 기망에 의하여 끌려가 강간을 당하고 성노예 생활을 한 것이지 결코 자발적으로 성을 매매하거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라유키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왜곡하는 허위 사실입니다.
6		38쪽 18줄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주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일본군의 성적욕구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동원되었고 일본군에 의하여 관리되었습니다. 위안부 동원 담당의 최상층에는 당연히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본군의 요구에 의해 조직적으로 위안부가 강제 혹은 기망, 유괴 등에 의하여 동원되었음에도 마치 일본군은 위안부 조달의 강제성에 잘못이 없다는 식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만을 강제연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기를 통한 기망과 유혹 등 진정한 의사에 반한 동원 역시 강제연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처럼 일본군의 강제성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속아서 끌려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할 수 있었어야 하지만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런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식민시대 조선은 현역 일본 육해군대장이 조선총독을 담당하였고 총독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육해군까지 통수한 것에 비추어 당시 조선은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통치를 받았음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위안부 동원과 이후 위안소 유지는 당연히 일본군의 책임이며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본에게 공적인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제 1 부 - 제 2 장 -1.	57쪽 6줄	‘주둔부대의 일원’이자 ‘부인같은 느낌’이었다는 위안부들. 사실은 이것이 조선인 위안부들에게 요구된 역할이었다. 투입되어, 회사에서 일하는 다사모녀, 성이 집에서 일하며 다사모녀 회사에 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갖가지 조작을 하도록 동원된 것이 위안부였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쟁터에서의 강간의 대상이 된 ‘적의 여자’와 위안부는 군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다. ...중략... 위안부들은 이 군인들과 휴일의 ‘평화로운 한 때를 보낼 수 있었을 것’은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와 성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적이었지, 조선인 위안부에게 부인과 같은 역할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본군 일부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시각이지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사실도 아닙니다. 전쟁터에 끌려가 원하지 않은 상대들과 하룻밤에 수차례 혹은 수십차례 성행위를 요당했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확인되지도 않는 일부 일본군 가해자들의 시각인 “부인같은 느낌”은 옳지 않은 것인 조선인 위안부들의 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일본군은 전쟁을 진행하는 현지에서 저항을 포기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강간을 하였고, 조선에서 끌고 간 위안부들은 이미 저항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강간을 위한 폭력을 행사할 필요 없이 실제적인 강간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이나 조선인 위안부는 궁극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동일한 피해자인데, 피고 박유하는 같은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단정하여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자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8	제 1 부 - 제 2 장 -1.	58쪽 3줄	조선인 위안부가 한 일은 성적 욕구를 받아주는 일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간호도 병대감기도 배웠고 심지어는 총쏘기(총조립?)까지 배워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지탱했다. 전쟁에 나갔다 오면 기모도 에 에프론 차림으로 맞아들이고 축하연에 참석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 생활을 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듯이 그들이 총쏘기를 배웠다면 이 역시 일본군에 의한 강제 교육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박유하는 마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병대감기와 총쏘기를 배운 것처럼 서술하고 심지어는 군인과 함께 전쟁을 지탱했다고 까지 표현하여 전쟁 범죄의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들을 전범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안부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려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유하가 주장하는 실상은 위안부 문제의 매우 지엽적인 부분으로 위안부의 실상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한 것이나 총쏘기를 배웠다면 이는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지탱한 것처럼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9	제 1 부 - 제 2 장	61쪽 18줄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이 진행

	-1.		화'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금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 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왜곡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험과는 너무 동떨어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 존재에 대한 금지 운운하면서 위안부들이 금지를 느끼면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억측을 하며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10	제 1부-제 2 장 -1.	62쪽12줄	"응 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고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곤 그랬네. 그랬기 때문에, 저서 내지애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힘줄 다할 줄은 물론이거니와 위안부의 경우도.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일본인 위안부가 자기 조국의 승전을 기원하면서 기뻐하면서 위안부 일을 하였다 표현하며,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인 위안부와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동일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는 서로 처한 입장과 출발점이 전혀 다름에도 기본적인 입장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고 마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도 일본인 위안부 처럼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마음가짐으로 위안부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11	제 1부-제 2 장 -1.	65쪽11줄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많은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원하지 않은 곳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고 원하지 않은 성노예 생활을 오랜 기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군은 그 직접적인 가해자입니다. 피고 박유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했던 위안부와 일본군이 발견된다고 하여 이러한 상황을 마치 조선인 위안부의 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것이었으므로 비난된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처지를 심각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12		65줄17줄	"(우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옷 벗기고 그러지 않지" (「강제5」 133쪽)라는 말에서 처럼, 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는 명확히 다른 존재였다.	일본군은 식민지 여성뿐만 아니라 점령지에서 현지 여성을 강간하거나 위안소에 동원하여 성노예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피고 박유하는 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에게는 명확히 다른 존재였다고 하면서 강간을 당한 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를 구별하여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반복적인 성노예 생활의 피해자성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박유하는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중국인 여자를 강간하였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강간하지 않아 중국인 여자와 조선인 위안부는 다른 존재라는 주장을 하나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강제적인 성행위를 반복하였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인 위안

				부 피해자들은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를 구별하는 것은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자들의 피해자성을 의도적으로 약화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일본군 점령지에서 점령지 여성으로 구성된 위안소가 존재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므로 점령지에서 강간을 당한 중국인 여성이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궁극적으로 차이가 없는 일본군 전쟁범죄의 피해자입니다.
13	제 1 부 - 제 2 장 -1.	67쪽12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뺐”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가 될까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며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매우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안부 생활은 소중했을 기억이 될 수 없음에도 박유하는 지나치게 미시적인 시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극히 독특한 일부사실을 전체인 양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하의 주장처럼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이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에 소위 사랑과 평화가 유지된 것이 아니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저항을 포기하고 온전히 지배당했기 때문에 강요된 평화가 유지되었을 뿐입니다. 피고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은 곳에 끌려가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끊임없이 강요당했던 여성들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위안부 생활을 했던 기간에도 즐거운 시간이 있었지 않느냐? 왜 그런 시간을 은폐하려고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강요했던 가해자들과 거웠었던 한때를 기억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14	제 1 부 - 제 3 장 -1.	98쪽 1줄	중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인들에게는 ‘적’의 관계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중에 스스로가 위안소를 경영하는 업자가 된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일본의 패전이란 우선 그동안 일의 자신의 위치와 재산을 잃는 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었어도 ‘간호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일본군과 함	피고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현지 위안부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일본군과 함께 조선인 위안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적”의 관계에 있었고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더불어 일본 패전의 피해를 입은 것은 “준일본인”이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조국땅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머나먼 제3국에서 끌려가서 일본군의

			깨 쉽게 빠져나온 경우도 있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한 것은 일본인들 시를 벌가지였다. 말하자면 돈을 던 경우도 이들은 모든 그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 나갔던 일본인 점령지에 나가있던 결과로 일본과 함께 현지에서 쫓겨 달아나야 했던 '준일본인'이기 때문이었다. 그 의미에서는 '위안부의 가난'은 업주들에게 노예 같은 착취를 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패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로 식민지나 점령지에 나가있던 일본인과 조선인 등 '일본 제국'의 구성원들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패전을 맞아 대부분 몸만 빠져나와야 했고 오랫동안 각각의 '조국'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이(일본인, 대만인과 함께) '조선인 위안부'가 중국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다.	성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일본여성이 일본에서 강제로, 혹은 기망에 의하여 위안소로 동원되고 성노예 생활을 하였다면 아무리 전쟁을 수행하던 도중이었던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수일본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준일본인으로서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식민지 여성으로 철저히 성노예로 이용당한 희생자입니다. 일본군이 패전을 한 경우 현지에서 생활할 능력이 되지 않는 조선인 위안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현지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며 현지를 탈출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적으로 취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현지에서 생활기반이 없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오해의 산물일 것이치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이 패전하였을 때 현지에 머물 수 있던 현지 위안부들과는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과 함께 패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음을 외면하고 피고는 마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준일본인으로서 일본군과 더불어 현지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였거나 현지 위안부들과 다른 혜택을 받으면서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15	제 1부-제 3 장-1.	99쪽 5줄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피고 박유하는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일본군 성노예였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쟁터를 벗어날 방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군과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노예 생활을 한 현지 위안부들 역시 피고 박유하의 논리라면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박유하는 전쟁범죄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다고 반복하여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6	제 2부-제 1 장-2.	111쪽 15 줄	'조선인 여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반도 출신 일본 여성-제국 치하 국민의 자격으로 군인에 대한 성의 제공을 요구당한 존재였다.	박유하는 강제 합방을 무효라고 하는 보편적 시각과 달리 조선인들을 모두 일본인이 라고 전제하고 있고 조선여인들이 일본인으로서 성의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

17	제 2 부 - 제 1 장 - 2.	111 쪽 18 줄	위안부에 '조선 여성'이 많았던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선은 '조선'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 여성이라고 단정하고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위안부가 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틀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위안부가 더 많은 것이 일본에 비해 가난한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많았던 것은 가난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만 일본이 일본여성을 동원하여 위안소 유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과 일본인 위안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며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현실적인 강제력 행사나 기망, 유혹 등에 의하여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뒷받침하였다는 점입니다. 일본정부와 일본군은 위안부를 동원하면서 일본 여성을 조선 여성에 사용하였던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도 일본인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하여 매춘을 한 것이며 매춘을 통해 애국을 했던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는 서로 같은 상황이었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8	제 2 부 - 제 1 장 - 2.	112 쪽 15 줄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위 표현과 마찬가지로 박유하는 조선인들이 강제나 기망, 허위 유혹 등에 의하여 위안부가 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가난하여 자발적으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9	제 2 부 - 제 1 장 - 2.	112 쪽 21 줄	위안부 중에 조선인 여성이 많았던 것은 식민지의 빈곤과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 등 전체 사회구조의 결과이다.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피고는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의 시각이라면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의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가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매춘여성으로 동일합니다.
20	제 2 부 - 제 1 장 - 4.	120 쪽 19 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의 행위가 매춘과 강간이 혼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간적 매춘이나 매춘적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본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에 종사하여 매춘을 동반한 일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가 되는 과정과 위안소에 계속 감금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입이 예상되는 매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피고 박유하는 성노예 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매춘"의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21	제 2부 - 제 1 장 - 5.	121쪽 16 줄	돌아오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돌아왔다고'고 한다면, 그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함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으로 자신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피고 박유하는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비참함과는 다른 상황으로 자신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으로 박유하가 반복하고 있는 "즐거운 기억"이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박유하는 위안부로서의 삶이 비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비참한 성노예 생활을 마치고 겨우 살아 돌아온 원고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과 경험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과 차별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참함을 부인하는 것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2	제 2부 - 제 3 장 - 1.	130쪽 17 줄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박유하는 성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군인과 즐기기 위하여 군인과 함께 아편을 사용하였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직전에 통증을 잊거나 없애는 방편으로 아편을 사용하였다는 증언이 있는데 아편을 통해 통증을 완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증언되어있음에도 이러한 고찰 없이 그저 피상적으로 아편 사용의 실상을 왜곡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박유하는 위안부들의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성적 쾌감을 위하여 아편을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위안부들의 일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23	제 2부 - 제 4 장 - 1.	137쪽 3 줄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위안부'를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라고 하여, 피해자인 '위안부'를 가해자와 동급의 지위로 보는 것은 사실을 호도한 것으로 위안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24	제 2부 - 제 4 장 - 1.	137쪽 6 줄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위안부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가 아니라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지라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조 기 의 의 명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가 일본군 승전 후 그 들 의 원하 며 일본군과 함께 노력을 했 고 본 인 성의 제공을 애국으로 본다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 성을 착취당한 위안부들의 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25	제 2 부 - 제 5 장 -4.	158쪽 7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 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 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 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 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진전의 표현에서 박유하는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은 전쟁터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으 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는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안부를 자원한 것처럼 허 위사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박유하는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위안부 가 되었거나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된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가 사실로 옳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강 제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 었던 조선인 위안부의 실상을 왜곡하여 마 치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인 매춘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고 책을 저술한 취지를 밝혔는바, 박유하 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인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므로 일본에게 더 이상 법 적책임 인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26	제 2 부 - 제 5 장 -4.	160쪽 10 줄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 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 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 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	조선인 위안부들을 애국처녀라고 묘사하여 성노예 생활을 한 위안부들의 실상을 왜곡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원하지 않는 전쟁범죄의 피 해자이자 성노예였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금지를 느끼면서 병사들을 위로한 역할을 하였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 다. 피고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국가를 위해 싸 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진 일본군을 위해 최 선을 다한 민간인 여자로서 가진 금지에 의하여 성노예 생활을 견뎌왔 것이라는 지 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선인 위안부의 심정과 실상을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27	제 2 부 - 제 5 장 -4.	160쪽 18 줄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 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 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 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금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 -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 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28	제 3 부 - 제 1 장 - 6	190쪽5줄	한 개인으로서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 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소를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느끼고 판단한 것과 무관하게 사실과 다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성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애국하는 일로 생각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안부들이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다고 단정하면서 위와 같은 기억이 강제로 은폐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을 15세 소녀 피해자이거나 투사 할머니로 각인시키기 위하여 과거의 기억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피고 박유하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연애”나 “애국”의 기억은 성노예 생활의 본질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거나 그런 기억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위안부 생활을 대표하는 기억이 아닙니다. 피고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억이 수동적으로 은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타의에 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29	제 3 부 - 제 1 장 - 6.	191쪽8줄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 (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장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장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 동원의 가장 상층에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은 국제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었고 일본 형법으로도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유하가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기술입니다. 박유하의 주장대로 위안부 동원이 아무런 법적 위배가 없는 것이었다면 일본내에서 일본 여성을 동원을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피고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장노동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업자와 군인개인에게 돌리고 있는바, 이는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1차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조선인 위안부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유하의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표현은 소위 일본 우익이라고 지칭되는 자들의 악의적인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로서 원고들이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며 주장하고 있던 것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30	제 3 부 - 제 3 장 - 1	205쪽 16 줄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앞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가 국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하였다고 주장하여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하였던 조선인 위안부의 실상과 전혀 다른 사실을 기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31	제 3부-제 3 장-1	제 206 쪽 8줄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주 중략...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중략... 그러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의를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를 가진 일본인으로서는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	피고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에 협력한 기억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성노예로 성을 착취당한 전쟁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선인 위안부 중 돌아오지 못한 분들과 그 이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본에게 협력한 사실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본에 대한 자발적인 부역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였던 조선인 위안부들의 실상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선인 위안부들의 처한 상황과 고통을 직시하면 일본군에게 가슴아파할 것이지만 위안부들이 일본군들에게 협력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고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일본 옷을 입거나 일본이름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랐음이 드러납니다.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32	제 3부-제 3 장-1.	207 쪽 10 줄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소녀상의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본군의 동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체를 유린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33	제 3부-제 3 장-1.	208 쪽 1 줄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실질적 강간을 지속적으로 당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이러한 일본군의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부정하면서 강제적 성의 제공을 위안부들의 협력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박유하는 홀로코스트와 조선인 위안부를 비교하면서 피해자이면서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가 홀로코스트에는 없다는 황당한 기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의 시각이라면 유대인들은 독일군에 붙잡혀 극렬히 저항하지 않고 복종을 하며 가스실에서 처형당해 제국주의 독일의 침

				략전쟁에 소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라고 표현하며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협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협력자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덧씌워 위안부들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시각이라면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동지'이자 '협력자'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인식 오류이며 왜곡입니다.
34	제 3 부 - 제 3 장 -1.	215쪽 21 줄	그러나 일본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사죄를 제언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이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피고는 향후에도 일본의 국회입법을 통한 해결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일본의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적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박유하가 말하는 국가폭력은 혐의의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군인의 직접적인 물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 대다수는 강제력에 의하거나 사기로 인한 기망에 의하여 위안소에 끌려갔으며 끌려가서는 공통적으로 강간을 당하였고 이후부터는 의사에 반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끌려가는 동안이나, 위안소에 머무는 동안 지속적인 국가폭력에 희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조선인 위안부 동원 방침과 위안소 설치가 일본군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강제력이 행사되었으므로 조선인 위안부 동원과 유지는 국가폭력의 극명한 예이며 이를 부정한다면 도대체 어떤 국가폭력을 국가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유하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이 없다고 단정하여 국가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바, 원고들은 그동안 일본제국주의의 국가폭력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박유하의 이러한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35	제 3 부 - 제 2 장 -2	218쪽 10 줄	그것은 위안부를 필요로 한 군이 위안부 모집을 조선이나 대만 총독부 등에 부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중략... 사기나 속임수를 써가며 모집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 동원과 관련하여 속임수 등이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일본군의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

			하는 일까지 일본군의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군의 수요를 알게 된 업자들이 사거나 속임수까지 써서 모집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본군은 그런 상황을 묵인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단속한 이상 단속쪽이 일본군의 인신매매에 대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위안부들이 가혹한 노동을 하게 된 것은 분명 일본군이 그런 시스템을 허용하고 묵인하고 이용했기 때문이지만, 그에 따른 처벌을 일본군에게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 한 위안소 이용이 국가범죄가 될 수는 없다.	느냐는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 본질이 아닙니다.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을 조장하고 이를 장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속임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이러한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방지하지 않은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업주나 포주가 자발적으로 군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에 의하여 먼저 조직적으로 군위안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실제로 위안부 동원이 이루어진 이상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마치 들키지 말고 도둑질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과 관련하여 들킨 사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독려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주장입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은 강제 혹은 기망으로 위안소에 끌려간 강간을 당하였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강간의 대부분은 일본군인이었습니다.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사기 모집을 단속하였으므로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는 위안소에서 이루어진 최초 강간이 거의 일본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36	제 3 부 - 제 3 장 -2.	219 쪽 16 줄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은 전리품이었다.	점령지의 피해 여성을 전리품이라고 표현하는 방식도 문제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를 군수품이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입니다. 더불어 박유하는 반복하여 조선인 위안부와 점령지 여성들을 구별하고 있는바, 조선인 위안부나 점령지 여성들이나 본질적으로 일본군의 성적 요구 해소에 희생당한 사람들임을 고려해볼 때 타당하지 않은 구별입니다. 피고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를 군수품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인 위안부들이 침략전쟁에 도움을 준 협력자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37	제 3 부 - 제 4 장 -1.	246 쪽 7 줄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매춘을 한 여성으로 치부해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38	제 3 부 - 4 장 -1.	247 쪽 14 줄	그러나 당시 위법사항이 인신매매뿐이었던 이상 위안소 설치와 이용을 "일본국의 범죄"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군이 한 일을 범죄지하려면 오히려 개인적인 강간이나 폭행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인신매매만 위법사항이 아니라 인신매매나 강제력 행사를 통해 위안부를 동원하고 동원한 위안부를 계속 위안소에 감금하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것은 모두 범죄행위입니다. 박유하는 위안부가 되는 과정과 위안소로

				가는 과정 또는 위안소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 계속적으로 성노예 생활을 한 위안부들의 실정을 외면하고 위법사항이 인신매매뿐이라고 범죄행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모두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적극적으로 관여되어 있으므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동원과 성착취라는 일본국의 범죄이지 결코 개인의 범죄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당한 성노예 생활에 대하여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박유하는 위안소 설치와 이용을 일본국의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39	제 3부 - 제 4 장 - 5	254쪽 23 줄	게다가 동원이 인신매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군이 알고도 지시한 것이 아닌 한 설사 방관하였다고 하더라도 <u>그 목인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강제연행이나 인신매매의 주체를 일본군으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u>	일본군은 위안부 동원의 적극 가담자이며 지시자입니다. 위안소에 도착한 조선 여인들에 대한 강간 주체는 대부분 군인입니다. 위안부 동원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 방침과 조직적 실행입니다. 단순히 인신매매 목인이 아니라 강간의 주체인 일본군의 행위가 명백함에도 그 책임에서 일본군을 제외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법적 책임의 주체 역시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아닌 하수인에 불과한 업주나 포주가 법적 책임의 유일한 주체가 아닙니다.
40	제 3부 - 제 5 장 - 2.	265쪽 2 줄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동지'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끔찍한 명예훼손입니다.
41	제 3부 - 제 5 장 - 2.	265 쪽 19 줄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띠는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피고 박유하는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인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동지적 존재라고 반복하여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원고들을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42	제 3부 - 제 5 장 - 2	272 쪽 22 줄	한국의 위안부들이 기금을 위안부금으로 받아들이고 반발한 이유는 과거에 받았던 차별 경험과 기억 때문이다. 식민지의 위안부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있게 된 이유가 가난한 여성이었기 때문이었고 그 가난이 피지배민족이라는 계급성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모욕당하는 것을 경계했고 그 결과로 반발과 저항이 강했던 것이다.	피고 박유하는 진상규명을 정확히 요구하는 원고들이 기금을 받지 않은 것이 차별 경험과 기억때문이라는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원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인 잘못을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았고 애매한 성격의 기금으로 책임을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반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마치 열등의식 때문에 피해자들이 기금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사

				실을 호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43	제 4부 - 제 2 장 -1.	291쪽6줄	<u>‘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u>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을 일본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성노예로 동원한 것이 본질임에도 박유하는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로 한 일본 공창제도에 조선인 위안부를 계속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종일관 조선인 위안부를 매춘을 한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희생양인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44	제 4부 - 제 2 장 -1.	294쪽5줄	<u>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정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u>	박유하는 일본 가라유키상과 조선인 위안부를 동일시하면서 가라유키상의 역할을 설명한 후 조선인 위안부가 가라유키상과 마찬가지로 일본 침략전쟁의 협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5	제 4부 - 제 2 장 -1.	294쪽6줄	<u>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u>	조선인 위안부가 어쩔 수 없이 성노예 생활을 하며 일본 군대에 수동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마치 자발적인 협력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46	제 4부 - 제 2 장 -1.	294쪽22 줄	<u>‘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u>	피고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를 동지이자 협력자로 규정하고 조선인 위안부를 침략전쟁 수행자와 동일시하여 일본군 전쟁 수행의 큰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의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식민지 시대 적극적인 독립운동과 저항을 하지 못하고 식민시대를 견뎌온 모든 조선인들은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가 됩니다.
47	제 4부 - 제 2 장 -1.	296쪽19 줄	<u>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u>	피고 박유하의 주장처럼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 매춘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가해자이면서도 여전히 가해사실을 부정하며 반성과 사과를 꺼리고 있는 현재의 일본정부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원고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 대다수는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자발적 매춘을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본군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이 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은 전혀 희

				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박유하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덧씌우고 있습니다. 박유하의 주장대로 자발적 매춘부가 존재한다는 것과 일본의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자발적 매춘부를 인정하지 않아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8	제 4부 - 제 2 장 -1.	298쪽5줄	문제는 네덜란드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 역시 ‘적’의 관계였다는 점이다.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과 동일시 하여 일본군들에게 강간을 당하였던 네덜란드 여성 피해자의 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호도로 피해자인 원고들을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49	제 4부 - 제 2 장 -2.	306쪽10줄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서는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데는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뿐이다.	조선인 위안부나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 여성들이 입은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일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로 동일함에도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와 다른 나라 여성들을 구별하고 심지어 조선인 위안부가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덧씌우고 “협력”의 기억까지 벗겨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건립에 대해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덧씌우고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다는 표현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 현재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피해를 덧씌우고 협력의 기억을 벗어낸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일본군 피해를 극명하게 표현하는 일환으로 제작된 것이지, 협력의 기억을 벗겨내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50	제 4부 - 제 2 장 -3.	310쪽 3줄	정대협은 ‘아시아’의 ‘위안소’가 똑같이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간’ 곳으로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겠지만 당시에 싱가포르에 가 있었던 조선인 여성은 ‘일본 제국’의 일원이었다...태평양전쟁 때의 조선인이란 ‘일본인’이고 자국을 침략한 적국의 여성일 뿐이었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전쟁범죄의 가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침략지 국민들에게 적국의 여성으로 보였다면 역시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침략 전쟁의 피해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51	제 4부 - 제 2 장 -3.	310쪽16줄	조선부 위안부들은 일본인 위안부들에게 차별을 당했지만, 뉘른베르거 재판에서는 이유로 대만인을 삼았어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	막연한 추측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다른 나라의 여성을 차별하는 가해자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지'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았으 리라는 보장은 없다.	있습니다.
52	제 4부 - 제 2 장 -3.	310쪽22 줄	'위안부'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한 국이 바라는 방식으로 '기림' 을 받기에는 모순이 없지 않 은 존재다.	원고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사 죄, 손해배상이지 '기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에 대하여 모순이 없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들 의 존재에 대해 왜곡을 하고 있으며 조선 인 위안부의 가해자성을 부각시키고 있습 니다.
53	제 4부 - 제 2 장 -3.	311쪽4줄	한국의 욕망이 투영된 '피해자 이자 투사'로서의 '민족의 딸' 을 보는 일은 우리가 아시아 에서 '적의 여자'이기도 했던 일을 잊는 일이기도 하다.	조선인 위안부인 피해자를 전쟁 범죄 가해 자이자 아시아의 적의 위치에 있었다고 표 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일본군에게 강간당하 고 위안소 생활을 했던 현지인 여성들 역 시 "적의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자성에 대하여 심 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일람표1

순번	쪽	내용	비고
1	19쪽	<u>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u>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2	32쪽	<u>'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3	33쪽	<u>'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u>	”
4	38쪽	<u>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u>	”
5	38쪽	<u>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u>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6	61쪽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 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위안부가 일본국에 자긍적

순번	쪽	내용	비고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u>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공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u>	협력자였음을 표현
7	62 쪽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u>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u>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8	65 쪽	가족과 고향을 떠나 떠나면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u>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u>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u>'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u>	”
9	67 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u>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u>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순번	쪽	내용	비고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뺐"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 봐"라는 말은, <u>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u>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10	99 쪽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 <u>전쟁범인</u> ', 즉 <u>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u> 그 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11	112 쪽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u>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2	120 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 <u>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u>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u>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3	130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	위안부가

순번	쪽	내용	비고
	쪽	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u>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u>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14	137쪽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u>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u>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u>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u>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15	144쪽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센삔'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u>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6	158쪽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 <u>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u> "든가 " <u>여성</u> 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7	160쪽	오히려 <u>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화해를 위해서』).</u>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순번	쪽	내용	비고
18	160쪽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금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
19	190쪽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
20	191쪽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u>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u> (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순번	쪽	내용	비고
		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21	205쪽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u>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u>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22	206쪽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u>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u>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23	206쪽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u>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u> 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
24	207쪽	<u>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u>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
25	208쪽	<u>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u>	”

순번	쪽	내용	비고
26	215쪽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 <u>강제연행</u> '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27	246쪽	1996년 시점에 ' <u>위안부</u> '란 근본적으로 ' <u>매춘</u> '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28	265쪽	<u>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u>	<u>위안부가</u> <u>일본국과의</u> <u>동지적 관계에</u> <u>있었음을 표현</u>
29	265쪽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u>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u>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30	291쪽	'조선인 위안부'란 " <u>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31	294	그들이 <u>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u>	위안부가

순 번	쪽	내용	비고
	쪽	<u>'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u>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32	294 쪽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렀던 것은 <u>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u>	"
33	294 쪽	<u>'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u>	<u>위안부가</u> <u>일본국에</u> <u>협력자였음을</u> 표현
34	296 쪽	그리고 <u>'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35	306 쪽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u>'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u>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였음을 표현

범죄일람표2

순번	쪽	내용
1	19쪽	<u>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u>
2	32쪽	<u>'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u>
3	33쪽	<u>'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u>
4	38쪽	<u>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u>
5	38쪽	<u>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u>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6	61쪽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순번	쪽	내용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u>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공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u>
7	62쪽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u>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u>
8	65쪽	가족과 고향을 떠나 떠나면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u>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u>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u>조선인 위안부</u>'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u>싹틀 수 있었다.</u>
9	67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u>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u>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순번	쪽	내용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뺐"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 될까봐"라는 말은, <u>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u> 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10	99쪽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u>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u>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11	112쪽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u>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u>
12	120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u>'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u>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u>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u>
13	130쪽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u>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u>

순번	쪽	내용
14	137쪽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u>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u>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u>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u>
15	144쪽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센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u>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u>
16	158쪽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u>"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u> (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17	160쪽	오히려 <u>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u> (화해를 위해서).
18	160쪽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u>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공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u> 는 <u>"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u> (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

순번	쪽	내용
		<u>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u>
19	190쪽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u>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 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u>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20	191쪽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u>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u> (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21	205쪽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u>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u>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22	206쪽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

순번	쪽	내용
		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u>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u>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23	206쪽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u>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u>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24	207쪽	<u>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u>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25	208쪽	<u>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u>
26	215쪽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 <u>강제연행</u> '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순번	쪽	내용
27	246쪽	1996년 시점에 <u>'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u>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8	265쪽	<u>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u>
29	265쪽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u>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u>
30	291쪽	<u>'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u>
31	294쪽	그들이 <u>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u>
32	294쪽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u>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u>
33	294쪽	<u>'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u>
34	296쪽	그리고 <u>'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u>

순번	쪽	내용
35	306쪽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u>'완벽한 피해'</u> 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u>'협력'</u> 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정본입니다.

2025. 1. 22.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선근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